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한·미 FTA 여·야정협의회」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I.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관하여, 별첨 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별첨: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

II.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별첨 합의문과 같이 지원대책을 이행한다.

※ 별첨: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합의문」

III.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제정하며, 별첨 내용과 같이 수정한다.

※ 별첨: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수정안

IV. 민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안과 관련, 'ISD', '개성공단' 및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안전성 확보' 사항은 별첨 합의문대로 이행한다.

※ 별첨: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관련 합의」

<첨부> 한·미 통상장관간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합의 보도자료 문안

2011. 10. 31.

한·미 통상장관간
18501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I.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미만에서 90%미만으로 상향·완화한다.
 -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발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발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발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13년부터 시행한다.
 - 조건불리발농업직불제의 지방비 분담을 30%에서 20%로 축소한다.
3. 아래의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병)를 확대 적용한다.
 -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4. 국내산과 경쟁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5. 축산소득과 어업(어로)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축종	현행 공제두수	개정 공제두수
소	30두	50두
돼지	500두	1,000두
닭·오리	15,000수	30,000수

6. 축산발전기금은 10년간 2조 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행 외에서 확보한다.
7. 농업용 물·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 보다 1,00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한다.
8.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9.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kid로우더'를 포함한다.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영세를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 한다.
12. 감귤을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 한다.
13.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작업 목적 활용을 위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011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II. 한미FTA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 적합업종의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합업종에 기(既)진입한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천만원에 처한다.
- 적합업종 일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20%에서 컨설팅의 경우는 5% 이상, 용자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비용, 무역조정 수당 등을 지급한다.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지경부로 이관한다.

3. 소상공인지원기금을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둔다.

- 기금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이상을 정부가 출연한다.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문화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

III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수정

- 제4조(정보의 공개)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제5조 제1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통상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로 수정한다.
- 제10조 2항 “보고하여야 한다.”는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단서는 삭제
- 제22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IV.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관련 합의

1. Exchange of Letters (별첨 정부 보도자료)

다만, 동 보도자료 제3항 중 '중소기업 작업반'에서 중소 제약 업체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분제도 함께 다루도록 하고,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ISD, 네거티브 리스트, 래칭 조항 등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2. 여야간 추가 합의

가. ISD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개성공단

정부는 본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근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다.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전성 확보는 민주당안대로 적용할것을 수용한다.

10.31(월) 오후 배포예정인 보도자료 문안

제 목 :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1. 2011.10.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교환하였다.
2. 지난 6.3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미 FTA가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는 될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간 서한교환 형식을 통해 합의하게 된 것이다.
3.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각각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회의를 개최(양국간 합의시 수시 회의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구체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작업반)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협정 발효 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통 작업반을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필요한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임(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FTA 중 최초로 설치)

- 작업반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공동 위원회에 보고

○ (서비스·투자 위원회) 정부는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새로 설치되는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포함,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제기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임. 정부는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의 대비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임.

※ 동 위원회에서는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 관련 사안을 다룸. (제13장 금융문제는 기설치된 금융위원회에서 다룸)

4. 정부는 양국 통상장관간 금번 합의된 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하여, 한·미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임 만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1.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우리나라의 기재청 FTA 총 최초로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 채널 설치
- 국내 생산의 50%,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 평가와 이에 기초한 대처방안 협의통로 마련

※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비중(상세 별첨)

- 사업체수 99.9%, 고용 87.7%, 제조업 생산 50.5%, 수출 33%

- FTA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협의

※ 6.23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총 14개 단체)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

- 우리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과정에 겪는 애로사항들을 조사하여, 중소기업 작업반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 추진

☞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작업반에서 논의·해결 모색

- 우리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특히, 국내에서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 작업반의 논의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자 국내 법령과 기준에 따르기로 각 주에서 규정(별첨)

□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협의채널로 활용

☞ 공동위원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결과지향적인 활동 모색

□ 동 작업반은 첫 회의(발효후 90일내) 개최 후 1년 내에 작업반 활동 결과와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서와 중소기업 관련 권고(recommendation)의 작성과정에 우리측 관심사항과 제기사항을 반영하여, 협정 이행 과정에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 증진 도모

□ 동 작업반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결과 지향적인 활동 모색

2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미국의 기체결 FTA(14개) 중 서비스·투자 분야의 논의를 위해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는 협정은 한미 FTA가 유일

□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서비스·투자분야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 설치 (발효후 90일내 첫 회의 소집)

☞ 서비스·투자 분야 이행상의 문제점 해소 모색

□ 서비스·투자 분야의 이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결과 지향적인 구체적 활동 수행)

- 등 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협의
 - ※ 서비스·투자 협정 이행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하는 것은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미 행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 요청

※ 미국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채널로 활용

-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활용.